

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5나204633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5나20463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5639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목동교회

변론 종결 2015. 11. 5.

판결 선고 2015. 12.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5639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D과 피고 사이에

2013.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72,314,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31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쓰고, 7면 아래에서 6행의 증거 설치 부분에 을마 제21호증을 추가하며, 9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9면 1행 다음 부분)

『⑥ A가 그 소속 근로자들인 F, G, H, I, J 등에게 급여를 일부 미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회사는 그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2011년도에도 H, I, J 등에게 수차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A와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회사 자금의 흐름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재정적 위기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는 A가 법정기일이 2012. 10. 16.인 평택시에 대한 토지개발부담금 31,746,9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4. 1. 14.부터 그 거래처인 이티엘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5. 30.까지 합계 453,634,06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법정기일이 2014. 4. 25.인 부가가치세 167,026,280원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재정상황이 이미 위기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A가 당시 위 토지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택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그

납부기일을 연기하려고 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물품 공급 거래에 있어 회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A가 일시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의 정도를 넘어 만성적인 경영 위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A는 2014. 4.경까지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A의 재정상황이 위기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로는 부족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경춘

판사권동주

판사항의동